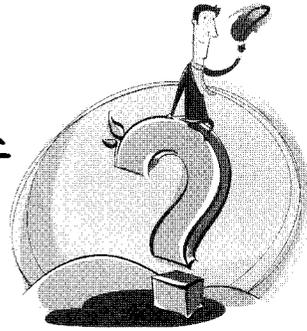


기타 주요정보 및 이슈



미국·유럽 타이어 연비등급 라벨표시 의무화

본고는 타이어 연비관련 라벨 표시와 관련하여 미국의 유력 타이어잡지인 「Tire Business」에 최근 3년간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미국 내 자동차의 연비를 2020년까지 평균 35마일로 현재보다 10마일을 더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관련 포괄 법안(omnibus energy bill)이 지난 07.12월 연방의회의 승인과 함께 19일 부시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법제화 되었다.

에너지 포괄법안은 타이어의 연비 등급의 라벨링 표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의회는 승인 이후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 하여금 동 타이어 연비 정보 프로그램을 작성토록 하였고, NHTSA는 금년 6.22일 마침내 150페이지 정도의 상당한 양의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제안서(Proposed Rule)를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 발표하였다. NHTSA는 동 제안서의 발표 후부터 금년 8.21일까지 동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관련 프로그램 및 법규 내용의 확정 공표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NHTSA가 제안한 타이어연비등급제(Tire fuel-

efficiency rating system)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교체용 타이어에는 타이어의 연료효율(회전저항), 내구성(마모), 안전성(접지력) 3가지 면에서 각각 0~100까지의 수치로 해당 타이어의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종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라벨을 칼라로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하고, 판매상들은 타이어가 판매되는 시점까지 타이어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고무협회(RMA)는 제안서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의견 수렴 기간을 30일 연장해 달라고 지난 7.31일 NHTSA에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바 있다. 동 협회의 주요 입장을 보면, NHTSA의 타이어 연비 등급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타이어 구매 시 제품에 대한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공감한다. 하지만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0부터 100까지

의 수치 범주는 너무 지나치게 넓어 실지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수치 등급 대신에 예컨대 동 협회가 실시한 타이어 소비자 성향 연구를 바탕으로 한 1~5개의 별 표시 등급제(five star system)와 같은 좀 단순한 등급 표시가 필요할 것이다. 동 협회는 종이 라벨 부착 방법 면에 있어서, 타이어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타이어에 라벨 부착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 보

다는 타이어 판매상들이 매장 내 전시공간이나 대기실 공간 등을 이용하여 브로슈어, 카탈로그, 컴퓨터 웹사이트 등의 형식으로 타이어 등급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EU에서는 자동차타이어에 대한 연비, 안전, 소음에 대한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 EU의회의 법안 검토를 통과하였고 빠르면 2012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미국, 타이어 연령표시 법제화 추진 철회

최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타이어 판매 시 판매상들이 계약서상에 타이어 연령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들 법안 중 캘리포니아의 AB 496 법안은 주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난 6월 하원까지 통과하였지만 주 상원 위원회의 공청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에 동 법안을 지지하고 후원하던 의원 측이 동 법안을 자진 철회하였다.

동 법안의 돌연한 철회에 대하여, 동 법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로 동 법안의 철회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 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있던 미국 고무협회(RMA)측은 동 법안의 지지자들이 상원에서 동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철회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캘리포니아 AB 496 법안이 왜 철회되었는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하지만 타이어 연령 정보 제공에 대한 타이어 판매상들의 의무 법제화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거론될 사안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AB 496법안은 판매하는 모든 타이어에 대하여 타이어 연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판매상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250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동시에 타이어 연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타이어 구매자는 판매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였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9.6.8일자, 7.20일자〉 K

